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2. 6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6. 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 근거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2조)
- 올바른 띄어쓰기 반영 등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

구미시의회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심사 대상의원””을 ““심사대상의원””으로 한다.

제5조 후단 중 “3일전”을 “3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하고,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4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“ <u>심사 대상의 원</u> ”이라 한다.)	2. ----- ----- “ <u>심사대상의원</u> ” -----
제5조(심문)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위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<u>3</u> 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	제5조(심문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</u> <u>일 전</u> ----- -----.
<u>제12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u>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	<u><삭 제></u>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	

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13조 (생략)

제12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